

산지관리 정보화 및 산지구분타당성조사

2007. 10. 26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I. 산지구분 및 타당성조사 개요

II. 예상되는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 검토

III. 도면정비 후 기대효과

IV. 향후 추진계획



1. 산지구분 및 타당성조사 개요

산지 구분 및 관리체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산지면적 6,452천ha
[전국토의 64%]

보전산지
[4,977천 ha, 77%]

준보전산지
[1,475천ha, 23%]

임업용산지

❖ 3,548천ha, 55%

공익용산지

❖ 1,429천ha, 22%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보안림,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사방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지역 등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림청장은 산지구분에 따라 전국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은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고시 (법 제4조제2항)

산지구분 변천사

-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지 확보(절대, 상대임지) ----- 1969년
- 도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대응(보전, 준보전임지) ----- 1985년
- 변동된 법정용도지역 일제 정비(보전, 준보전임지) ----- 1991년
- 국토 균형발전, 산지구분체계재편(생산, 공익, 준보전임지) - 1997년
- 산지관리법 제정(임업용, 공익용, 준보전산지) ----- 2003년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기 도래 ----- 2007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 ✓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지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
 -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산지구분도 작성에 반영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검토사항

- 지형, 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 반영 여부
-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결정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반영 여부
- 산지관리의 정책방향, 산지이용 수요 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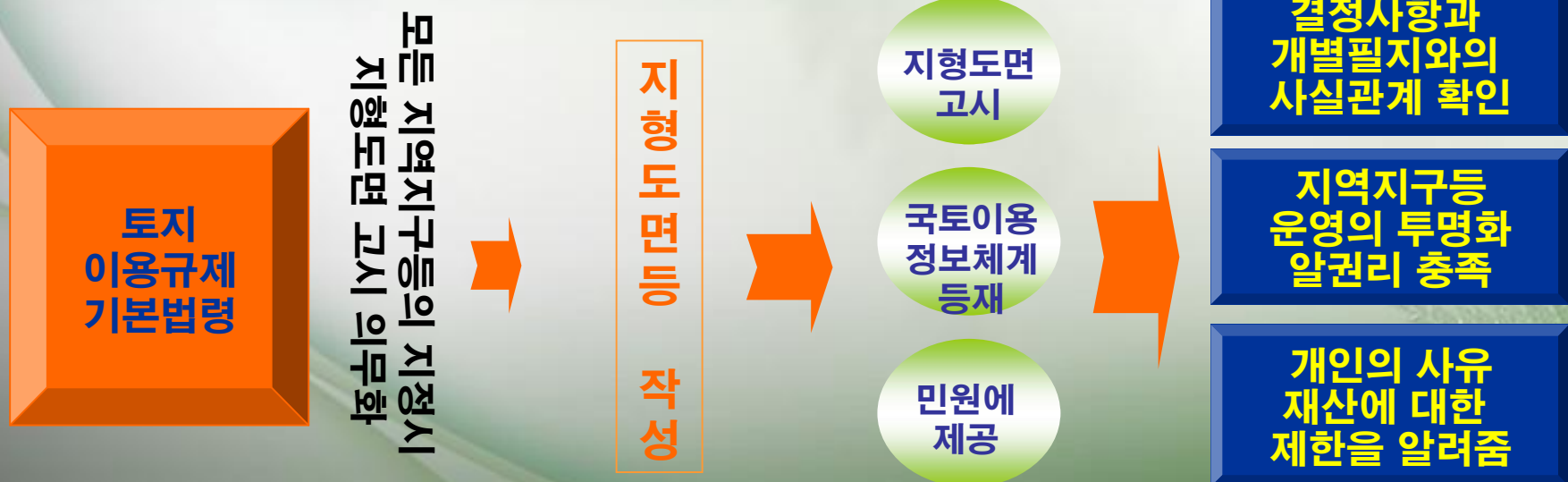
규제도면 작성 및 고시

● 법적 근거

- '05.1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제정,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 지형도면 고시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됨과 동시에 민원에 제공

● 지형도면등 작성의 필요성

- 지역·지구등 결정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
-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려줌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0년마다 타당성조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고시 등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계되는 각종 산지 용도별 규제도면 전산화 구축
- 산지 관리의 합리적 업무 수행과 관리자의 정책결정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지관리정보화사업
- 사 업 기 간 : 2005 ~ 2007년
 - 2005년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시·군·구 및 관리소)
 - 2006년 : 산지구분도 DB 구축 (조달계약, SK C&C 컨소시엄)
 - 2007년 : 산지구분도 제작 및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 ※ 시·군·구 및 관리소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필지별 확인 추진

산지구분도 전산화 추진 상황

2005년 ~ 2006년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자료 수집
 - 법정림에 대한 현황자료
 -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현황자료
- 산지구분전산화 및 DB구축

2007년

- 산지구분도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
 - 전산화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실시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소요예산 : 약 20억

산지구분도 전산화 내용

-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따른 산지구분 조정 반영(산지관리법)
- 산지 용도별 규제도면 작성 . 지적기반 지형도면 작성(토지이용규제기본법)
 - 한국토지종합정보망(KLIS) 구축자료 활용(용도지역·지구도, 연속지적도 등)
- 보전산지관리, 산지전용, 토석채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 등을 위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

'97년 작성한 산지구분도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계
인제	소계			1,367,994
	가리산	산2	37.190	37.190
		산4	16.760	16.760
		산6	32.331	32.331
		산7	34.010	34.010
		산8	16.264	16.264
		산9	28.060	28.060
		산10	14.719	14.719
		산11	44.026	44.026
		산12	24.496	24.496
		산13	31.636	31.636
		산14	35.209	35.209
		산15	36.298	36.298
		산16	122.969	122.969
		산17	35.504	35.504
		산22	46.245	46.245
		산23	69.222	69.222
		산26	62.777	62.777
		산27	26.083	26.083
		산28	44.719	44.719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관: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우	(전화:)
대장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시·군·구	읍·면·리·동			

대장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개발원두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해구역()	
		항공기주둔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3 용지		용지보호구역() 용지보호구역()	해당없음()
4 산림		보전임지[생산()·공익()]	해당없음()
5 자연공원		자연공원() 자연공원()	해당없음()
6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당없음()
7 하천		하천보호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해당없음()
		방죽보호구역()	
8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없음()
9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변전소()]	해당없음()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0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11 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	해당없음()
12 기타			해당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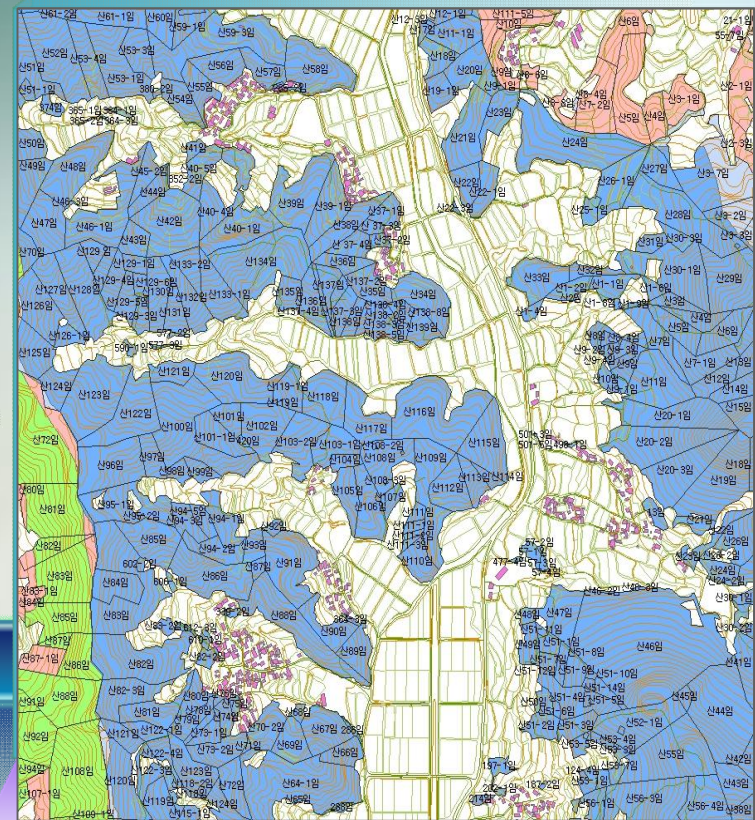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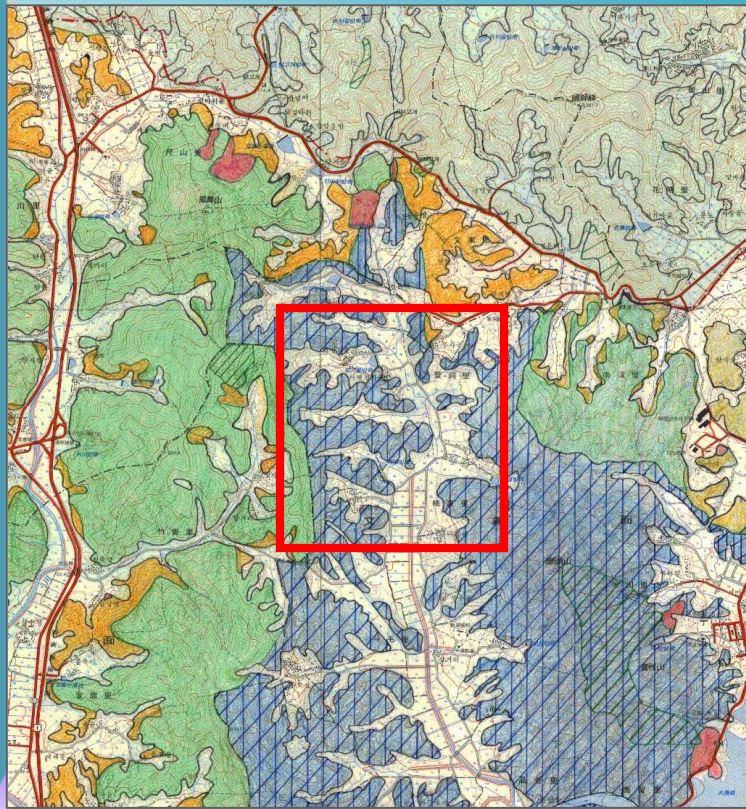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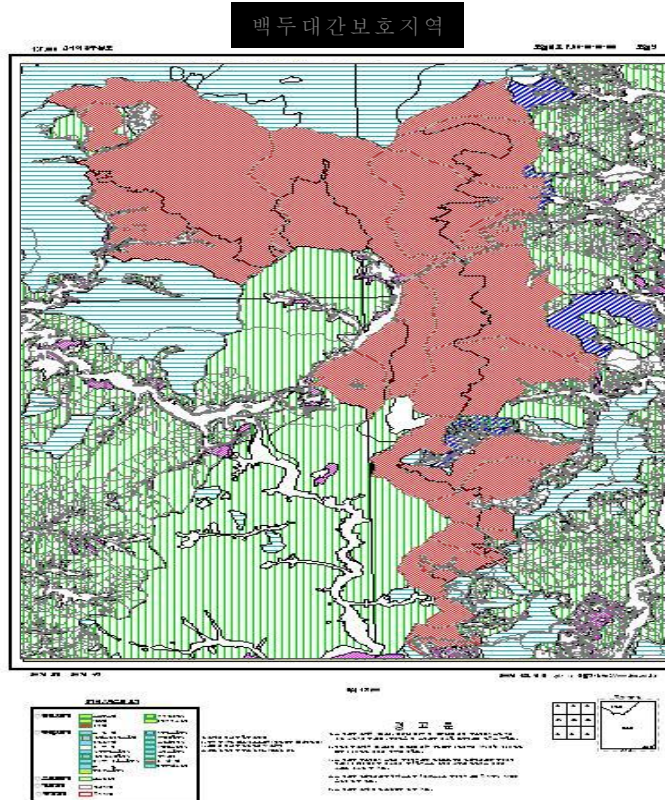
원	조	수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사방지	기타	비고
				7,400		

210 × 297mm(보존용지(2종) 70a/m²) 또는 전자용지 500×260mm(인쇄용지(특급) 1008)

연속지적 기반의 대축척 도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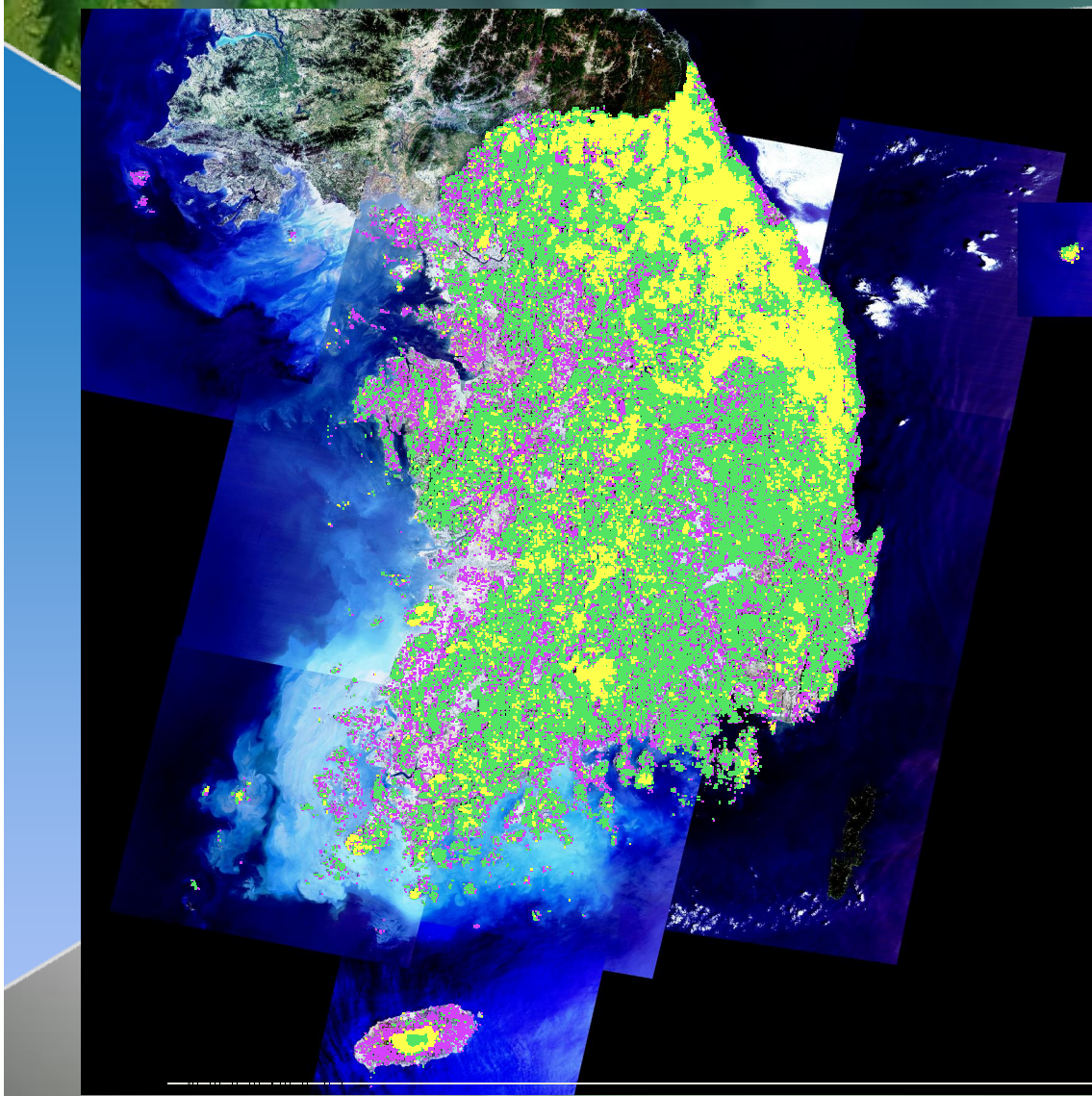
❖ 산지관련 법령에 규정된 규제관련 도면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대상 자료
- '07년 산림관련 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가능
- 추가 예산 소요 없는 일괄 구축

백두대간보호지역 / 임업진흥권역 / 자연휴양림 / 보안림 등 9종

) 작성 결과



● 도면 현황

- 기존 1/25,000 : 793도엽
- 신규 1/5,000 : 22,095도엽

● 임지현황 (2006.12월 현재)

- 임야필지 : 2,524천 필지
- 토지임야 : 1,338천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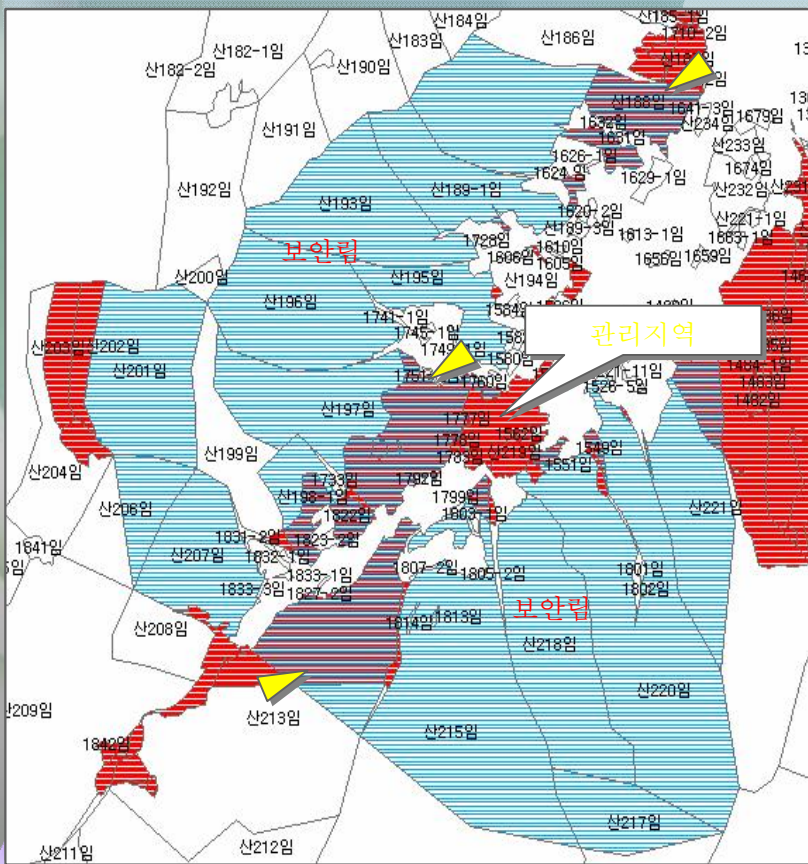
● 산지현황

- 보전산지 : 5,075천ha
- 준보전산지 : 1,515천ha

● 보전산지 현황

- 임업용산지 : 4,032천ha
- 공익용산지 : 1,043천ha

❖ 종전 산지구분도의 문제점 개선 및 여건변화 반영



필지기반 대축척도면기반 산지구분

- ❖ 종전 1/25,000 축척의 산지이용구분도 1ha 미만 소면적 표기 불가 (도면상에 지번표기 없음)

산지이용구분의 일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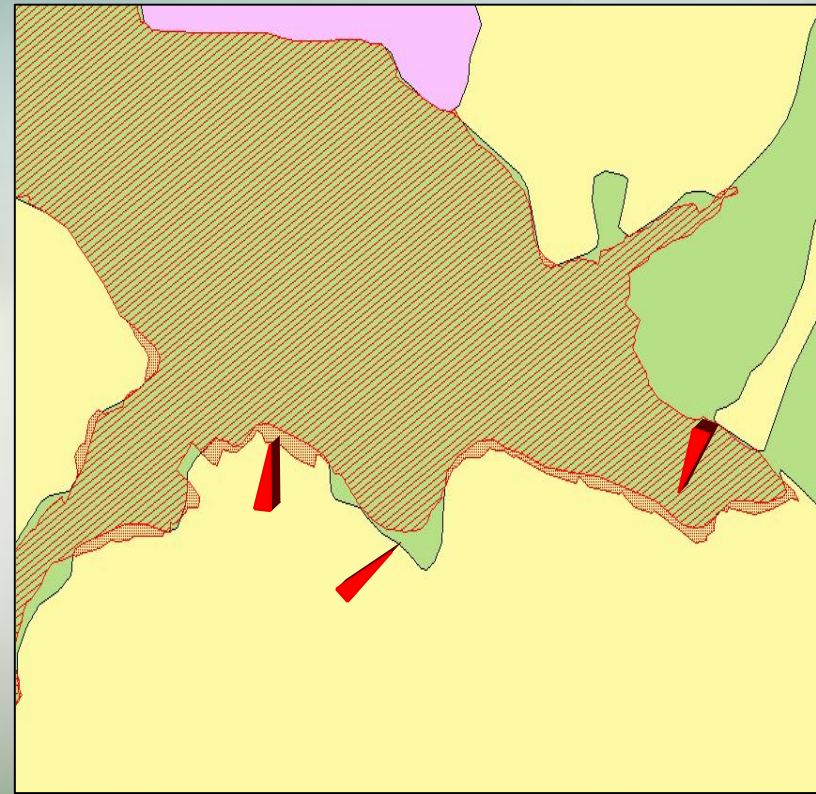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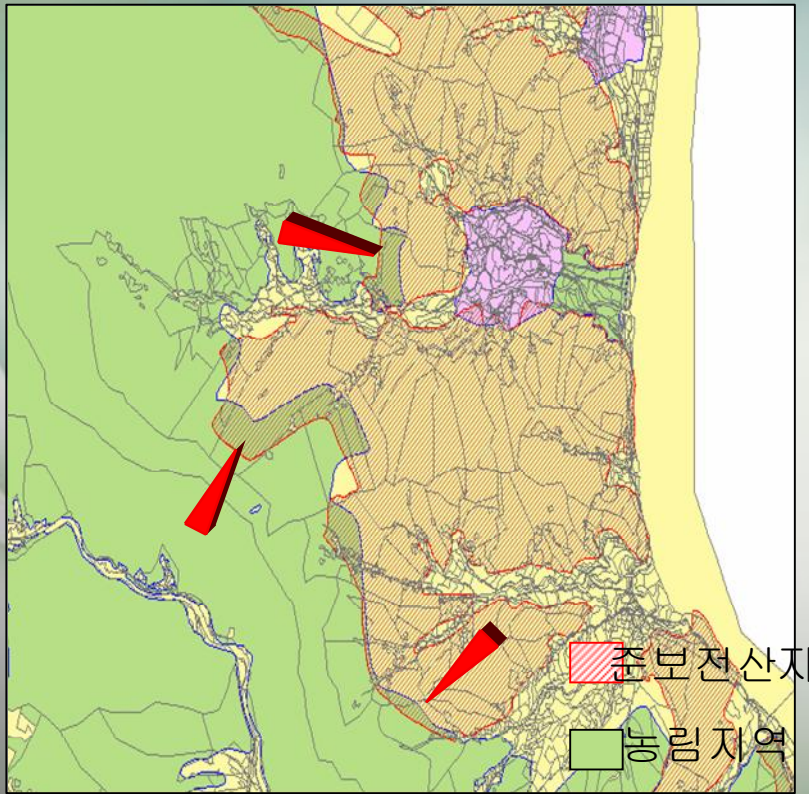
- ❖ 지형도와 지적도, 타 용도지역지구간 불부합
- ❖ 산지구분 부정확으로 분쟁 및 민원발생

국토이용정보체계 연계

- ❖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후 2년 이내 지적고시 의무화 (2년 경과 후 자동 실효)
- ❖ 지적고시 내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전자적 민원 발급 의무화 (2009.1.1 시행)

불부합 사례 발생

- 산지구분도와 산지구분대장과 불부합 발생
-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간 불부합 발생
- 기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대두





II. 예상되는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 검토

소축척 지형도에 수작업 산지구분 표시로 정확성 및 관리상 문제 내포

- 일반인이 산지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도면만으로 확인 불가
- 따라서 산지구분도와 대장을 동시에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민원발급 부서(시군 민원실)에서는 비치된 대장만 확인한 후 민원 발급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 1/25,000 산지구분도에 1/6,000임야도를 일치시켜 지번별 보전산지 표시 및 면적 구적 과정에서 오차 발생

- 오차가 발생한 도면을 토대로 면적을 계산하거나, 격자판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 발생
- 잘못된 면적을 그대로 산지구분대장에 기록하고 민원발급 등에 활용

산지 소유자 등의 산지 구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이해관계 침해

-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산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산지구분에 대한 관심 증대
- 산지구분은 해당 산지의 가격, 개발 가능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수 산주들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길 희망

‘97년 고시한 산지구분도의 산지구분이 사실과 다르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준보전산지 면적이 누락 또는 축소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

-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및 각종 인·허가에 활용한 산지구분대장과도면이 상이한 경우 처리방안
- 도로개설 및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주변이 변화된 여건 변화
- 농경지, 택지 등 산지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여건 등

지자체 개발 여건을 고려한 산지구분 조정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수요 등의 여건 등을 이유로 산지구분 조정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검토필요



Ⅲ. 도면 정비 후 기대효과

산지구분에 대한 정확도/정밀도 제고

- 산지이용구분의 정확도(1/25,000 ▷ 1/5,000) 및 정밀성 제고(필지기반)
- 산지이용구분의 신뢰성 제고 (중전 1ha이상면적 ▷ 전 임야필지로 확대)



민원
최소화

- 자료갱신의 간소화, 자료 공유의 용이성 증대로 효율적 자료관리 가능
- 전용 가능지 판단 등 신속한 정보 분석으로 업무의 과학성, 적시성 제고



업무
효율성 제고

- 연속지적 및 타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신속한 적용
- 산지이용구분도와 대장의 변경 관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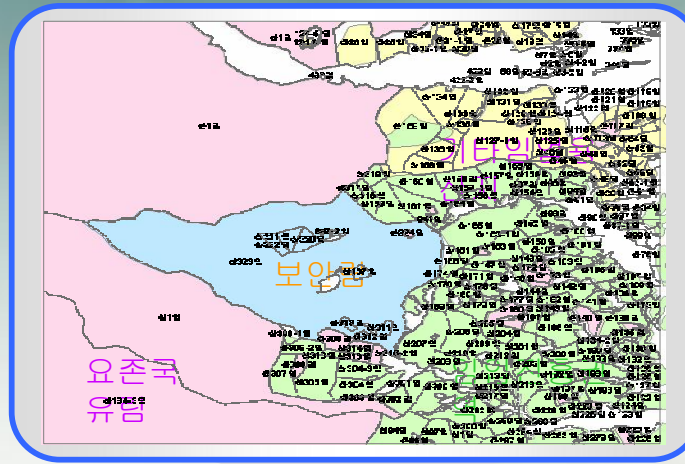
유지관리의
일관성확보

One-Stop 대 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연속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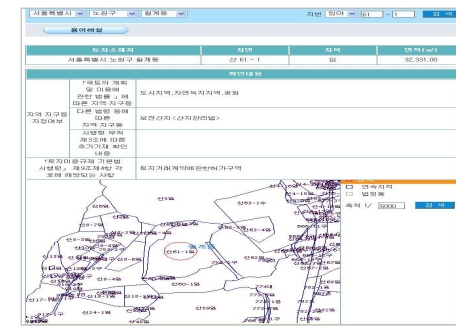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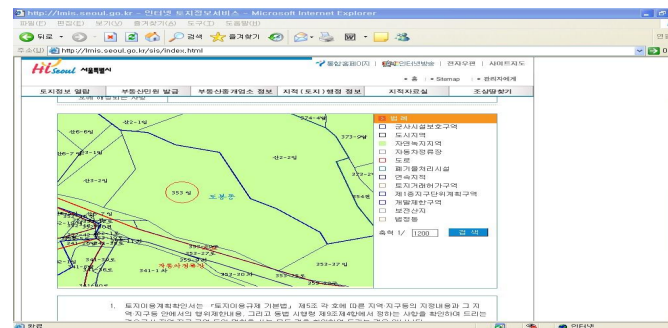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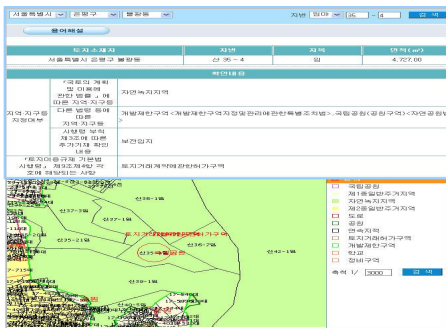


산지이용구분도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토지정보 열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가능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IV. 향후 추진계획

산지구분 조정 지침(안) 마련

o 산지구분 조정(안) 마련 및 의견 조희

산지구분도(안) 확정 및 공람·공고

o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시·군·구별로 공람·공고

- 공람(안)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및 이의신청: 공고 후 30일간

o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및 산지구분도 수정작업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 고시

o 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o 산지구분도 확정·고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시범운영



*Your complimentary
use period has ended.
Thank you for using
PDF Complete.*

[Click Here to upgrade to
Unlimited Pages and Expanded Features](#)

감사합니다